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북 포항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내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규모

- (모집규모) 8개사
- (지원금액)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60백만원)(1개사기준)

지원구분	지원금 한도	사업기간	접수형태
신규구축	최대 60백만원	6개월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동일수준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지원금(최대)	사업기간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0.6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기초 → 기초)	0.6억원	6개월

-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 *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방비지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 * 사업 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6개월+3개월, 총 9개월)

□ [참고]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수준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미적용	수기작성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스마트공장 미적용
lv.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lv.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
lv.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고도화
lv. 5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고도화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신규구축	포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단계 구축 예정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경북 포항 내 소재하는 제조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14~'25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
으로 판단

※ 스마트팩토리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기초), 업종별 특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제조데이터분석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요건검토 시 중복사업 검토 예정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5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 (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에서 목표 대비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 신청 가능. 단, 종 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기업
- 도입 계획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등)

□ 일정 및 절차

- (공고기간) 2026년 3월 18일(수) ~ 4월 30일(목)
- (접수기간) 2026년 4월 1일(수) ~ 4월 30일(목)
- (지원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 반드시 사업명을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모집 공고'로 선택](#)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서식-1]	
2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서식-2]	
3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해당시 도입기업	공장등록증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5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내 서류	
6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2024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2025년 재무제표		
7	필수 도입기업	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정부24 https://www.gov.kr
8	필수 공급기업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9	해당시 도입기업 공급기업	우대사항 증빙자료	우대사항(가점) 해당 시	
10	해당시 도입기업	기추진사업 완료보고서	동일수준의 경우 반드시 제출	

4. 선정 절차

□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①접수 및 요건검토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 접수 및 요건검토	◦ 신청서 검토	◦ 신청자격, 가점 확인
②기술성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③현장확인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 사례 발견 시 탈락
④최종선정	◦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결정	-

□ 기술성 평가

- (평가대상)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접수기업 중, 요건검토 “적정” 기업 대상
- (평가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총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기업선정)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 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 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 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 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 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 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 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 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아래 가점 항목 참조 (항목별 3점, 5점까지 인정)	(5)
합 계		100

우대가점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 포항시가 지정하는 유망강소기업 지정 기업일 경우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제출
공급기업 소재지가 포항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 소재하는 경우 * 본점 및 지점이 경북 포항 내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현장 확인

- (평가대상) 기술성 평가 통과 기업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대조 및 확인,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등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5.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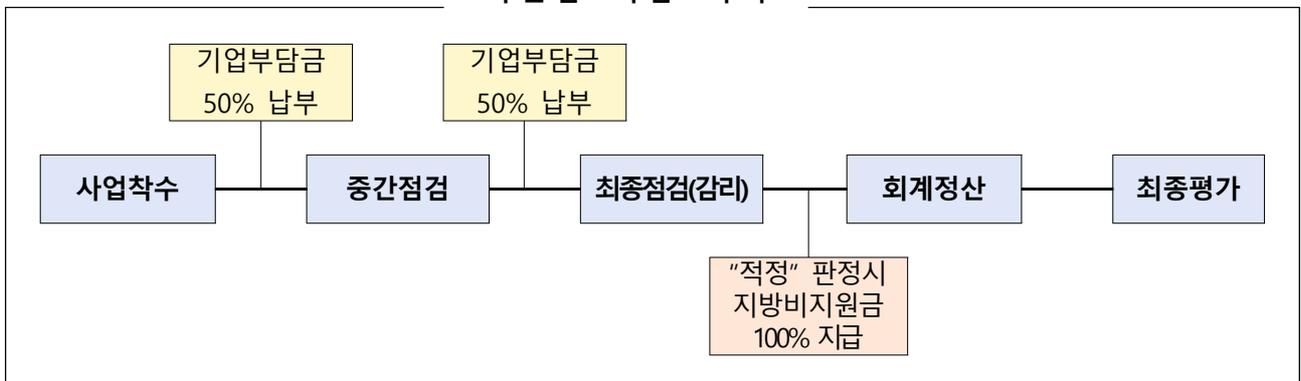
□ 사업관리 기준

-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준용함

□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

-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은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
- 사업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여부 확인
 - *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도입, 공급)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 아래 기준 준수 필요
 -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최소 50% 이상 지급
 - 최종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잔액 지급
- 최종점검 결과, “적정”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 최종점검 결과 “적정”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최종점검 결과 “보완” : 재점검 실시, 재점검 결과 “적정”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지원금 지급 시기 >



□ 기타사항

- (교육이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 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시 수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공급기업(①대표자 및 임원, ②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기술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총 1명] - 내용 :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 의무 수수료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시 수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 (회계정산) 지정회계법인이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 실시
 - *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500천원\)](#)
- (기술임치)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의무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 2년 이상 임치
 -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8백만 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함

6. 문의처

- 포항TP 전략사업본부 기업지원팀 (054-223-2242, smk@ptp.or.kr)